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건 축 물 의 분 양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분양현황 등 자료의 요구 및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64호, 2025.12.2. 공포, 2026.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분양 정보 관련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추어 규정을 명확히 함.

나. 건축물 분양정보 종합관리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안 제11조의 2)

1) 분양 관련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부장관등이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기술지원,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등 근거를 신설함.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1조의3)

건축물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의 처리 근거를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내용 및 신고 자료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 수리 정보
 3.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현황
 4.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수리한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정보
 5. 그 밖에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 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축물분

양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등(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분양계약서) ① (생 략)	제9조(분양계약서) ① (현행과 같 음)
② 법 제6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분 양사업자는 <u>분양계약 등을 체결 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u> 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분 양할 수 있다.	② ----- ----- <u>분양받을 자를 선정 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u> ----- -----.
<u><신 설></u>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u> (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 라 허가권자, 분양사업자 및 관 련 기관 · 단체 등에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분양신고의 내용 및 신고 자료</u>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 <u>신고 수리 통보 내용</u> 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양 <u>신고를 수리한 건축물의 사용</u>

<신 설>

<신 설>

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
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내용

4.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
른 분양계약 체결 현황

5. 그 밖에 건축물의 분양과 관
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
는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
른 건축물 분양 정보관리체계
(이하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
계”라 한다)를 통하여 제출하도
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분양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 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운영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를

<신 설>

<신 설>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의 2제4항에 따라 건축물분양정보 관리체계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을 갖춘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 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등(법 제8조의2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